

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2. 1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7. 2. 16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개정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, 아동위원회의 아동위원 정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문 변경함(안 제1조)
 -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 ⇒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
- 나. 읍·면의 인구에 따른 공정한 아동위원 수를 정함(안 제3조)
 - 읍·면별 2명으로 하되,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음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